

「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

1. 개정 이유

원유 잔류물질 검사 결과 보고 대상 및 주기를 조정 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기 위해 고시 개정 추진

2. 주요 개정내용

가. 잔류물질 검사결과 보고 대상 및 주기 조정

- 집유장 원유 검사 담당 책임수의사가 원유 잔류물질 검사 결과 등 보고를 시·도 축산물 시험·검사기관장에게만 보고하도록 조정
- * (현행) 농림축산검역본부장, 시·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에 보고 → (개정) 시·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에게만 보고
- 시·도 축산물 검사기관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보고 주기 조정
- * (현행) 분기별 → (개정) 반기별

나. 잔류물질 검사 결과 기록을 구체화하기 위한 보고서식 변경

- 잔류물질 검사 결과 기록을 구체화하여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도록 보고서식 변경

3. 기타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[별표4]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- 다. 합 의 : 식약처, 농식품부 공동 운영 고시로 부처간 합의
- 라. 기 타 : (1) 행정예고 : 의견없음(2021. 5. 3. ~ 2021. 5. 24.)
(2) 규제심사 : 비규제(2021. 4. 27)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45호

「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9-128호, 2019. 12. 1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1년 6월 4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관할 시·도 축산물 시험·검사기관장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”를 “관할 시·도 축산물 시험·검사기관장에게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분기별”을 “반기별”로 하고, “분기”를 “반기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제1항과 제2항에”를 “제2항에”로 하고, “분기”를 “반기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제2항의 분기별”을 “제10조제2항의 반기별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검사결과 등 보고) ① ----- ----- 다음 달 5일까지 <u>관할 시·도 축산물 시험·검사기 관장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</u> 보고하여야 한다. ----- ----.</p> <p>② 시·도 축산물 시험·검사기관장은 <u>분기별</u> 잔류물질검사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<u>분기</u> 첫 달 10일까지 -----.</p>	<p>제10조(검사결과 등 보고) ① ----- ----- 다음 달 5일까지 <u>관할 시·도 축산물 시험·검사기 관장에게</u> 보고하여야 한다. ----- -----.</p> <p>② 시·도 축산물 시험·검사기관장은 <u>반기별</u> 잔류물질검사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<u>반기</u> 첫 달 10일까지 -----.</p>
<p>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<u>제1항 과 제2항에</u> 따라 보고받은 잔류물 질 검사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한 후 그 결과를 다음 <u>분기</u> 첫 달 까지 -----.</p>	<p>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<u>제2항에</u> 따라 보고받은 잔류물질 검사 실 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그 결 과를 다음 <u>반기</u> 첫 달까지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검사결과 제공) ----- ----- 농장의 위생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<u>제2항의 분기별</u> 잔류물질 검사 결과를 ----- -----.</p>	<p>제11조(검사결과 제공) ----- ----- 농장의 위생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<u>제10조제2항의 반 기별</u> 잔류물질 검사 결과를 ----- -----.</p>

[별지 제3호]

상시검사결과

상시검사 총괄 실적(00월)

집유장명	납유 농장수	불합격 농장수	총 검사량 (Kg)	합격량 (Kg)	불합격량 (Kg)	불합격내역(단위: 호수, Kg)						비고	
						관능	비중	알콜	진애	잔류물질	기타		

잔류물질 불합격 상세실적(검사 시료건수: 건, 불합격 시료건수: 건, 불합격 총량: kg)

농장명	농장식별번호	시료구분*	검사일	불합격량 (Kg)	불합격 원인	불합격 물질명(계열)	처리결과 (폐기 또는 전환)	비고

* 농장, 차량시료 등 구분하여 기입하되, 차량 시료의 경우 농장명에 원인 농장명 기입

[별지 제4호]

잔류물질 검사결과

I. 상시검사

집유실적

시도	집유장명	납유 농장수	불합격 농장 수	총 검사량 (Kg)	합격량 (Kg)	불합격량 (Kg)	불합격내역(단위: 호수, Kg)						비고	
							관능	비중	알콜	진애	잔류물질	기타		
계														

잔류물질 불합격 상세실적(검사 시료건수: 건, 불합격 시료건수: 건, 불합격 총량: kg)

집유장명	농장명	농장식별번호	시료 구분*	검사일자	불합격량 (Kg)	불합격 원인	불합격 물질명(계열)	처리결과 (폐기 또는 전환)	비고

* 농장, 차량시료 등 구분하여 기입하되, 차량 시료의 경우 농장명에 원인 농장명 기입

II. 계획검사

□ 검사 시료건수: 건(농장시료 00, 차량시료 00, 저유조 00), 불합격 시료건수: 건(농장시료 00, 차량시료 00, 저유조 00)

집유장명	농장명	시료 구분 ¹⁾	검사일자	불합격량(Kg)	불합격 원인	불합격 물질명	검출농도 (mg/kg)	처리결과 (폐기 또는 전환)	비고 ²⁾

1) 농장, 차량시료, 저유조 등 구분하여 기입하되, 차량 시료의 경우 농장명에 원인 농장명 기입

2) 상시검사 부적합 시료, 농장의뢰검사 등 추가정보 기입